

# NH Bank legal brief

# 혁신금융서비스 개요 및 현황

2022. 3. 28.

#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2. 2. 16.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환으로 **금융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새로** 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성 테스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요와 주요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이나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u>기존 금융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u> 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으며, 특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각종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특례를 받게 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예를 들어 농협은행이 운영하는 AI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는 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 바운드 방식의 영업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u>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직접 수행</u>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게 예금수입, 대출심사 등 <u>금융회사의 핵심업무 등을 위</u> 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와 비교됩니다.



####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의 비교

구 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법적 근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4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25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지정 효과	인허가 등 규제의 특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능한 금융회사 본질적
	(인허가, 업무범위 등 금융규제의 특례)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위탁계약 체결)
	※ 핀테크기업/금융회사 → 금융위 승인 → 영업	※ 핀테크기업 → 금융위 승인 → 본질적 업무 수탁
업무수행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기업 독자적 운영	금융회사와의 위탁관계 맺은 핀테크기업
주체		
효력 기간	2년 + 연장 2년 가능	2년
만료 시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허가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허가
		(필요시 혁신금융서비스로 독자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주요 심사기준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회사 등\*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다수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다수의 회사가 같이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주요 심사기준으로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증대, ③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④ 업무영위의 자격·능력 여부, ⑤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금융질서의 안정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의 의미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각과 방식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을

<sup>\*</sup>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업 영위 공사·기금 등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회사는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이라는 점을 자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금융위 '22. 2. 16.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0건 지정

금융위는 '22. 2. 16.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고, 각 증권사별로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22년 9월부터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를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현행「자본시장법」등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을 소유하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u>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증권회사가 소수단위 거래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해당 증권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취득시 관</u>련 규제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여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은행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신규 금융서비스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AI 은행원을 비롯하여, 은행 앱 또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 시중 은행이 배달 플랫폼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융위가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빅데이터는 물론 생활편의 영역까지 플랫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무지원국 규제대응지원반

박혜원 반장

노은호 변호사

윤정은 변호사

**2** 02. 2080. 8741

**2** 02. 2080. 8745

**2** 02. 2080. 8739

@ hwonpark

@ eunho noh

@ jevun8835

@nonghyup.com

@nonghyup.com @nonghyup.com